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내 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포획허가 시 수렵인은 수렵면허 및 수렵보험을 소지한 지역의 모범 수렵인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 함)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포획허가를 받은 자

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즉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6. 6. 20.)」에 따르면 포획기간에 있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2개월 이내로 하고 포획지역은 조류(새) 및 수류(짐승)인 경우에는 피해 지역 리·동 단위로 포획허가를 하여야 하며, 허가 시 포획허가 동물의 수량만큼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배부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포의 소지가 허용되고 선발 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정신적으로 총포 사용에 문제없는 자 중에서 포획단원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 미준수 사례



1. 공주시 ○○○○과(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가. 수렵보험 미 가입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포획허가 대상자 중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 8명, 2016년 7명, 2017년 6명 등 총 21명이 771일 동안 수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야생동물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2] 유해야생동물 보험 미가입 기간 포획허가 현황

년도	위반 인원	허가일자	포획기간	보험가입기간 (포획가능기간)	미보험기간 (포획불가능기간)	감사 지적사항
2015	8명	2015.6.24 2015.11.1	2015.6.24~ 2016.4.30	개인별 상이	개인별상이 (위반기간 19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2016	7명	2016.5.1 2016.7.1	2015.5.1~ 2016.9.12	개인별 상이	개인별 상이 (위반기간 126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2017	6명	2017.4.1	2017.4.1~ 2017.10.31	개인별 상이	개인별 상이 (위반기간 44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결격사유 확인절차 없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 함)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62명, 2016년 52명, 2017

년 48명 등 총 162명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허가자의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3] 결격사유 조회확인 유무 여부

년 도	허가일자	허가자	결격사유 조회확인자	결격사유 조회확인 누락자	감사 지적사항
2015	2015.5.6~ 2015.11.1	○○○ 외 61명	0명	62명	결격여부 미확인 및 초과일자 (162명)
2016	2016.5.1 2016.7.1	○○○ 외 51명	0명	52명	
2017	2017.1.4 2017.4.1	○○○ 외 47명	0명	48명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다.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미발급 및 관리대장 미작성

공주시 ○○○○과는 아래 [표4]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위한 ‘포획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량과 배부수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62명, 2016년 52명, 2017년 48명 등 총 162명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음에도,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4] 포획허가 관련 표지발급 및 관리대상 현황

연도별	허가인원 (명)	포획허가계획 관련(매)			관리대장 관리		비고
		확인표지 발급수량	확인표지 배부수량	확인표지 반납수량	관리 대장	기재 여부	
2015	62	미발행	미배부	-	○	×	
2016	52	미발행	미배부	-	○	×	
2017	48	미발행	미배부	-	○	×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라. 포획허가기간 관리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6. 6. 20.)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2015년 51명(18일~120일), 2016년 28명(11일~60일), 2017년 48명(27일~152일) 등 총 127명에게 2015년 3,998일, 2016년 1,631일, 2017년 4,921일 등 총 10,550일을 허가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5] 허가기간 초과내역

연도별	총 포획 허가자	2개월 초과허가		감사지적사항
		포획허가자(초과기간)	총 초과일수	
2015	○○○ 외 61명	○○○외 50인(18일~120일)	3,998일	기간초과허가현황 (127명 10,550일)
2016	○○○ 외 51명	○○○ 외 27인(11일~60일)	1,631일	
2017	○○○ 외 47명	○○○ 외 47인(27일~152일)	4,921일	

※ 공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2. 부여군 ○○○○과(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가. 수렵보험 미 가입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포획허가 대상자 중 아래 [표6]과 같이 2016년 1명, 2017년 2명 총 3명이 37일 동안 수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야생동

물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6] 유해야생동물 보험 미가입 기간 포획허가 현황

년도	위 반 신청인	허가일자	포획기간	보험가입기간 (포획가능기간)	미보험기간 (포획불가능기간)	감사 지적사항
2016	○○○	2016.1.15	2016.1.15.~ 2016.4.30	2015.8.1.~ 2016.4.1	2016.04.02. ~ 2016.04.30(29일)	「야생생물보호및관리 에관한법률」 제23조 위반(위반기간 : 29일)
2017	○○○	2017.5.17	2017.5.17.~ 2017.7.31	2016.7.27.~ 2017.7.27	2017.07.28.~ 2017.07.31(4일)	「야생생물보호및관리 에관한법률」 제23조 위반(위반기간 : 8일)
	○○○	2017.5.17	2017.5.17.~ 2017.7.31	2016.7.27.~ 2017.7.27	2017.07.28.~ 2017.07.31(4일)	

※ 부여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결격사유 확인절차 없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 함)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7]과 같이 2015년 2명, 2016년 14명, 2017년 51명 등 총 67명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허가자의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7] 결격사유 조회확인 유무 여부

년 도	허가일자	허가자	결격사유 조회확인자	결격사유 조회확인 누락자	감사 지적사항
2015년	2015.1.9.	○○○ 외 86명	85명	2명	결격여부 미확인 및 무단 포획허가 (67명)
2016년	2016.1.7.	○○○ 외 109명	96명	14명	
2017년	2017.1.20.	○○○ 외 83명	33명	51명	

※ 부여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다.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미발급 및 관리대장 미작성

부여군 ○○○○과는 아래 [표8]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위한 ‘포획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량과 배부수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87건, 2016년 110건, 2017년 84건 등 총 281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음에도,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8] 포획허가관련 표지발급 및 관리대상 현황

연도별	허가인원 (명)	포획허가계획 관련(매)			관리대장 관리		비고
		확인표지 발급수량	확인표지 배부수량	확인표지 반납수량	관리 대장	기재 여부	
2015	87	미발행	미배부	-	○	×	
2016	110	미발행	미배부	-	○	×	
2017	84	미발행	미배부	-	○	×	

※ 부여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라. 포획허가기간 관리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6. 6. 20.)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9]와 같이 2015년 75명(10일~61일), 2016년 89명(13일~61일), 2017년 64명(15일~61일) 등 총 228명에게 2015년 2,620일,

2016년 2,771일, 2017년 2,440일 등 총 7,831일을 허가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9] 허가기간 초과내역

연도별	총 포획 허가자	2개월 초과허가		감사지적사항
		포획허가자(초과기간)	총 초과일수	
2015	○○○ 외86인	○○○ 외74인(10일~61일)	2,620일	기간초과허가현황 (228명 7,831일)
2016	○○○ 외109인	○○○ 외88인(13일~61일)	2,771일	
2017	○○○ 외83인	○○○ 외63인(15일~61일)	2,440일	

※ 부여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3. 청양군 ○○○○과(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관리 부적정)

가. 수렵보험 미 가입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포획허가 대상자 중 아래 [표10]과 같이 2015년 11명이 654일 동안 수렵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야생동물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10]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년도	위반 인원	허가일자	포획기간	보험가입기간 (포획가능기간)	미보험기간 (포획불가능기간)	감사 지적사항
2015	11명	2015.1.30	2015.2.1. ~ 2015.12.31	개인별 상이	개인별 상이 (위반기간 65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

※ 청양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결격사유 확인절차 없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 함)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1]과 같이 2015년 24명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허가자의 법령 위반 전력 유무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하지 않고 야생동물포획을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11] 결격사유 조회확인 유무 여부

년 도	허가일자	허가자	결격사유 조회확인자	결격사유 조회확인 누락자	감사 지적사항
2015년	2015.1.30.	○○○외 23명	0명	24명	결격여부 미확인 및 무단 포획허가 (24명)
2016년	2016.1.26	○○○외 24명	25명	0	
2017년	2017.1.31	○○○외 27명	28명	0	

※ 청양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다.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미발급 및 관리대장 미작성

청양군 ○○○○과는 아래 [표12]와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였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위한 ‘포획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량과 배부수량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년 25건, 2016년 27건, 2017년 55건 등 총 107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하였음에도, 포획 유해야생동물 확인표지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2] 포획허가관련 표지발급 및 관리대상 현황

연도별	허가인원 (명)	포획허가계획 관련(매)			관리대장 관리		비고
		확인표지 발급수량	확인표지 배부수량	확인표지 반납수량	관리 대장	기재 여부	
2015	25	미발행	미배부	-	○	×	
2016	27	미발행	미배부	-	○	×	
2017	55	미발행	미배부	-	○	×	

※ 청양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라. 포획허가기간 관리 부적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16. 6. 20.)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2015년 23명(273일), 2016년 24명(34일~274일), 2017년 27명(33일~273일) 등 총 77명에게 2015년 6,279일, 2016년 6,108일, 2017년 6,985일 등 총 19,372일을 허가기간 2개월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허가하였다.

[표13] 허가기간 초과내역

연도별	총 포획 허가자	2개월 초과허가		감사지적사항
		포획허가자(초과기간)	총 초과일수	
2015	○○○ 외 25명	○○○ 외 22명(273일)	6,279일	기간초과허가현황 (77명, 92건, 19,372일)
2016	○○○ 외 27명	○○○ 외 23명(34일~274일)	6,108일	
2017	○○○ 외 55명	○○○ 외 26명(33일~273일)	6,985일	

※ 청양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공주시장, 부여군수, 청양군수는

[주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에는 수렵보험 가입여부와 결격사유 확인, 확인표지 발급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 포획허가기간 확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